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납 세
고 지 서

우체국

바코드
18mm

음성변환용(
외부)

과세번호

담당자

문의처

자동차세(자동차소유)

받는 사람

바코드
17mm

우편반송용

납 부 장 소

은 행 방 문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
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 상 계 작

온 라 인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바코드
18mm

음성변환용(내부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시·군 자동차세 (수납은행
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

세목

납세연월기

과세번호

전자납부
번호

납기 내:

까지

세 목

납부할 세액

자동차세

지방교육세

합 계

납기 후:

까지

납기 후 금액

수납은행용
바코드

지방자치
단체의 장

직인

시·군

자동차세(소유분)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

과세기관

검

회계

과목

세목

연도

월

기분

읍면동

과세번호

검

납 세 자

납세자번호:

주 소

과세대상

지 방 세

세 목

납부할 세액

부과내역(과세표준)

자동차세

지방교육세

합 계

납기 내

까지

납기 후

까지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,
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전자납부
번호

과세표준과 세율				자동차세 부과 안내												
승용자동차	영업용		비영업용			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49조부터 제154조까지									
	1,600cc 이하	cc당 18원	1,000cc 이하	cc당 80원												
	2,500cc 이하	cc당 19원	1,600cc 이하	cc당 140원		납세의무자	▪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·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									
	2,500cc 초과	cc당 24원	1,600cc 초과	cc당 200원												
	※ 비영업용: 3년차부터 연 5%씩, 최대 50%까지 세액 경감															
그 밖의 승용자동차	영업용		비영업용			징수방법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과세기간</th><th>납 기</th></tr><tr><td>제1기분</td><td>1~6월</td><td>6.16~30.</td></tr><tr><td>제2기분</td><td>7~12월</td><td>12.16~31.</td></tr></table>	구 분	과세기간	납 기	제1기분	1~6월	6.16~30.	제2기분	7~12월	12.16~31.
	구 분	과세기간	납 기													
제1기분	1~6월	6.16~30.														
제2기분	7~12월	12.16~31.														
20,000원		100,000원														
승합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		납부지연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										
	고속버스	100,000원	-													
	대형전세버스	70,000원	-													
	소형전세버스	50,000원	-													
	대형일반버스	42,000원	115,000원													
	소형일반버스	25,000원	65,000원													
화물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													
	1,000kg이하	6,600원	28,500원													
	2,000kg이하	9,600원	34,500원													
	3,000kg이하	13,500원	48,000원													
	4,000kg이하	18,000원	63,000원													
	5,000kg이하	22,500원	79,500원													
	8,000kg이하	36,000원	130,500원													
	1만kg이하	45,000원	157,500원													
특수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		구제신청 기한 안내											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157,500원													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58,500원													
3륜 이하 소형자동차	구 분	영업용	비영업용		이의신청	▪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									
	대형특수자동차	36,000원	157,500원													
	소형특수자동차	13,500원	58,500원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지방교육세</td><td>자동차세 납부할 세액</td><td>30%</td></tr></table>						구분	과세표준	세율	지방교육세	자동차세 납부할 세액	30%	심판청구	▪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자동차세 납부할 세액	30%														